

#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554호 2018. 05. 24.(목)

##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2018-91호 정동 소곡 금자정 창조작미마을 만들기사업 기본계획 변경 및 시행계획 수립 고시—2
- 사천시 고시 제2018-92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8
- 사천시 공고 제663호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공고—9

회 람										
--------	--	--	--	--	--	--	--	--	--	--

발행 : 사천시 / 편집 : 공보감사담당관 / ☎ 831-2215 / FAX 831-6012

# 사 천 시 공 보

제554호(2)

## 고 시

사천시 고시 제2018-91호

### 정동 소곡 금자정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기본계획 변경 및 시행계획 수립 고시

사천시 고시 제2017-244(2017.12.14.)호로 기본계획 수립 고시된 「정동 소곡 금자정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기본계획 변경 내용과 시행계획 내용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라 기본계획 변경 및 시행계획 수립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5월 24일

## 사 천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정동 소곡 금자정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2. 사업의 목적 : 본 사업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의 종합적·체계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3. 사업비 : 1,000백만원
4. 주요 사업내용  
가. 기본계획 대비 시행계획 변경 내용

사업 분야	세부사업	사업개요	사업비(백만원)		비고
			기본계획	시행계획	
합 계			1,000	1,000	
기초생활기반확충			330	380	
	소곡문화마당 조성	문화마당 조성 A=1,218㎡	330	380	변경
지역경관개선			550	500	
	소곡유원지 환경정비	환경 정비 A=2,600㎡	60	10	변경
	주민화합 수변 쉼터 조성	쉼터 조성 A=8,014㎡	490	490	

# 사 천 시 공 보

제554호(3)

사업 분야	세부사업	사업개요	사업비(백만원)		비고
			기본계획	시행계획	
<b>지 역 역 량 강 화</b>			<b>70</b>	<b>70</b>	
	교육 및 견학	1식	27	27	
	맞춤형 컨설팅	1식	18	18	
	마을축제 활성화 지원	1식	15	15	
	운영지원	1식	10	10	
<b>부 대 비 용</b>		<b>기본 및 실시 설계 등</b>	<b>50</b>	<b>50</b>	

## 나. 변경 사유

사업분야	세부사업	변경사유
기초생활 기반시설	소곡문화마당 조성	사계절 이용 가능한 놀이시설 설치등 세부 조성 계획 변경
지역경관 개선	소곡유원지 환경정비	「하천법」과 「사천천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공작물 설치를 제외한 최소한의 환경 정비만 실시

5. 사업시행자 : 사천시장

6. 사업시행기간 : 2017년~2019년(3년간)

7. 수용 또는 사용 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면	리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b>합 계</b>					<b>9,232</b>							
1) 소곡문화마당 조성					1,218							
1	정동	소곡	1024-1	천	103,274	1,218		국토교통부				
2) 주민화합 수변 쉼터 조성					8,014							
1	정동	소곡	437	구	4,193	535		농림축산 식품부				
2	정동	소곡	454-4	유	602	565		사천시				
3	정동	소곡	455	유	1,980	1,954		사천시				
4	정동	소곡	447-3	유	2,123	1,725		사천시				
5	정동	소곡	432-3	유	1,901	1,699		사천시				
6	정동	소곡	457-2	구	23	24		사천시				
7	정동	소곡	456-4	유	2,830	1,512		사천시				

# 사 천 시 공 보

제554호(4)

8. 본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관계 법령 의제 사항

가.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허가

※ 하천점용허가 내용 별도 붙임

9. 관계 도서는 사천시청 지역개발과(055-831-3241)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 사 천 시 공 보

제554호(5)

붙임)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3.3.23>

## 하 천 점 용 허 가 증

제2018-3호

주 소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사천시청)		
성명(법인명)	사천시장(지역개발과)		
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등록번호)	619-83-00049		
하 천 명 칭	사천강	하 천 등 급	지방하천
점 용 장 소	경남 사천시 정동면 소곡리 1024-1천		
점 용 면 적	214m <sup>2</sup>		
최 초 허 가 일	2018. 2. 21		
점 용 기 간	영구		
허 가 조 건	"별첨과 같음"		
「하천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합니다.			
2018년 02월 21일			
<b>사 천 시 장</b> [인]			
비고: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승계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sup>2</sup>]

# 사 천 시 공 보

제554호(6)

## 허 가 조 건

- 공사는 제출된 계획서에 따라 사업시행자 책임 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시행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안전간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수해 및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인근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보상, 소송 등 피허가자가 전액 부담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및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비산.먼지.흙탕물 등으로 인한 민원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오염에 대한 저감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원발생시 사업시행자가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 점용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유사시 피허가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 허가 이후 하천법 제10조(하천구역의 결정 등), 동법 제25조(하천기본계획), 동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동법 제28조(하천공사의 대행)와 관련하여 하천관리청(하천공사 대행자를 포함한다)에서 허가의 취소.변경, 그 효력의 정지, 공사 및 그 밖의 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피허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허가목적, 허가규모(시설물, 면적 등), 허가장소 외 일체의 점용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 공사 완료시는 공종별 전,중,후 사진 첨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점용허가로 인한 권리.의무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점용허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554호(7)

- 점용허가로 인한 권리.의무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점용허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 하천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와 하천 및 부속물을 손괴하거나 손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 상기 허가조건 및 기타 제반법령 미 이행시는 하천법 제69조 및 허가조건에 따라 허가의 취소, 변경, 효력의 정지 등을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취소 시는 하천을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하고 취소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하천과 관련하여 조건사항 해소를 위한 변경 외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 「하천법」외 다른 법령에 의한 신고, 협의, 승인,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은 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554호(8)

## 고 시

사천시 고시 제2018 - 92호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 아 래 -

지구명	위 치	지정개요			지정 사유	비고
		유형	등급	지정면적(㎡)		
중촌	사천시 서포면 자혜리 908-21번지 일원	해일 위험	나	10,945	고조위시 자연배수가 곤란하고, 고파랑 내습시 저지대 해안도로 월파와 해일에 의한 침수피해 발생	

붙임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도면 1부(따로붙임).

2018년 5월 24일

사 천 시 장

# 사 천 시 공 보

제554호(9)

## 공 고

사천시 공고 제 2018 - 663 호

###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공고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을 「수산업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내역

면 허 번 호	사천양식 제 34 호	
면 허 면 적	10.0 ha	
어 업 의 종 류	패류양식	
어 업 의 방 법	바닥식	
어 장 의 위 치	사천시 마도동 저도 지선	
포획·채취·양식물	패류	
어 업 의 시 기	연 중	
면 허 기 간	2008. 6. 3. ~ 2018. 6. 2.	
연 장 허 가 기 간	2018. 6. 3. ~ 2028. 6. 2.	
허가일자 및 번호	2018. 5. 21. 제 2018-1 호	
어업권자	주 소	경남 사천시 마도동
	성 명	저도어촌계

2018년 5월 21일

사 천 시 장